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1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이해식・김교흥・박상혁

채현일 • 한민수 • 정준호

양부남 • 이연희 • 김영진

김영환 · 천준호 의원

(119]

제안이유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법의학적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의학자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검시업무 및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시체에 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법의관"이란 이 법에 따 른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함(안 제2조).
- 다.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 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6조).
- 라. 법의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 절차상의 검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행정법상 목적의 검시 등을 수행함(안제7조).
- 마.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사체의 검시가 시작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매장·화장은 검시가 종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음(안 제9조).

- 바.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법의관은 검시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2조).
- 아. 법의관, 검시보조자 및 직무대행자(이하 "법의관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 및 제22조).
- 자.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시업무 및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시체에 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변사체"(變死體)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를 포함하여,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의 시체, 사망원인(이하 "사인"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시체 또는 사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시체를 의미한다.
- 2. "검안"(檢案)이란 변사체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손 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부검"(剖檢)이란 변사체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해 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검시"(檢屍)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5. "검시업무"란 검시 및 검시에 관한 제반 업무로서, 사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수사기관에 대한 검시결과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6. "법의관"(法醫官)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7. "검시보조자"(檢屍補助者)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의관의 검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기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시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2.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 3. 검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 4. 검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5. 검시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 6.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 7. 검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
-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검시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법의관의 자격) ①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해부학 전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3.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법의관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법의관의 직무) 법의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형사소송법」 제140조 및 제173조제1항에 따른 사체의 해부 및

같은 법 제222조의 검시(檢視)에 수반되는 사체의 해부 등 사법 절차상의 검시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체의 해부 등 행정 목 적의 검시
- 3.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군의문사 등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망자의유족 또는 관할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
- 4. 그 밖에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제8조(직무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법의관으로 본다.
 - ③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보조자에게 제9조 제1항의 변사체 검안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검안 결과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

는 사람 또는 검시보조자의 업무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법의관의 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사체가 적절한 장소로 이동된 경우 그 장소에서 검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안한 법의관은 검안 결과 및 생존시의 병력 등을 참고하여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변사체의 검시가 시작되면 검시가 종료되기 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매장·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의관은 변사체의 검시가 종료되기 전까지 시체를 안치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의 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부담하다.
 - ⑤ 법의관은 검시가 종료된 후 유족에게 시체검안서와 사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안한 법의관은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수사기관에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검안 업무, 서류의 작성·제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법의관의 검안 방법 등) ① 법의관은 시체의 외상, 시반(屍斑), 경직도, 시체에서 유출된 체액 등을 조사하고, 생존시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검안한다.
 - ② 법의관은 시체를 검안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체내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체내에서 체액을 채취하거 나 의료방사선기기 촬영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변사체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검안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사기관의 협조 등) ①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고 위험, 수사상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법의관과 협의하여 변사체를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변사체가 발견된 당시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③ 법의관은 검시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자료요청) 법의관은 변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및「의료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① 법의관 및 검시보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시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법의관등의 독립성 보장)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시보조자(이하 "법의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비밀 누설 금지) 이 법에 따라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의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의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법의관 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의관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

- 제18조(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 ① 국가는 검시 중이거나 검시 예정인 시체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병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병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 병원 내에 시체 보관 시 설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시보조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법의관등의 직무 수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